

공식 신청서

COVID의 피해

귀하의 사업체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까?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휴업,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COVID-19 지원 - 중복 혜택 진술서

이 진술서는 3단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es Assistance Program)이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NJEDA)를 통해 제공하는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었던 모든 사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 본 진술서는 NJEDA에게 중복 혜택에 대해 스태포드법(Stafford Act) 312절에서 규정하는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업체의 공인된 서명자(소유주,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또는 임원)입니다. 본인은 미국 연방정부와 NJEDA에게 다음을 진술하고 증명합니다.

귀하는 기타 COVID-19 지원(NJEDA 보조금 및/또는 대출 프로그램,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SBA 경제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SBA 경제 피해 재난 지원금(Economic Injury Disaster Grant, EIDG), 기타 주 또는 지방 자치체, 또는 보험)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로 답한 경우, 신청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Small Business Association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Small Business Association 경제 피해 재난 지원금(Economic Injury Disaster Grant, EIDG)

Small Business Association 경제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NJEDA 소상공인 긴급 대출 지원(Small Business Emergency Loan Assistance)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1단계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 지방 카운티 보조금

뉴저지주 주택 및 모기지 자금 COVID-19 소유주 보조금(New Jersey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Covid-19 Landlord Grant)

New Jersey Redevelopment Authority 소상공인 임대료 긴급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Small Business Lease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

보험금

기타 프로그램/자금지원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상태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금액 승인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승인 날짜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Small Business Emergency Grant Assistance) 2단계 자금 목적

자금 용도/사용 증서

귀하의 사업체는 Murphy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필수 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까?

2020년 3월 9일 이후로 영업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었습니까?

귀하의 사업체는 아직 운영 중이며 다시 개장할 계획입니까?

수정됨 귀하의 사업체는 아직 운영 중이며 다시 개장할 계획입니까?

중복 혜택 진술서에 열거된 잠재적인 총 중복 자금을 수령한 후에도 귀하의 사업체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승인될 경우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급여

임대료

모기지

채고

소모품

기타 운전자금 경비

위의 어느 것도 아님

종교적 소속

귀하는 종교단체, 신앙, 종교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귀 사업체는 학교입니까?

보조금으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까?

커리큘럼에는 종교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종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까?

종교 교육은 필수입니까(모든 학생들이 학위, 증서, 졸업장 등을 수여하려면 종교 교육으로 구성된 수업이나 과정에 등록하고 학교의 필수 커리큘럼을 수료해야 함)?

학생들은 자유 재량으로 종교 교육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활동,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용품, 재료, 장비 등의 비용이나 기타 활동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품목의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까?

귀 단체는 보조금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계획입니까?

로비 활동

귀 사업체는 로비 활동/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가 정보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 또는 제외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다음의 배경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할 때 "신청인"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개인을 말합니다. 참고: NJEDA의 신청서에서 법률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은 NJEDA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 34(Byrne 1976) 및 NJEDA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긍정 답변으로만 신청인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NJEDA는 설문조사의 답변에 열거된 모든 사안의 심각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관련 완화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 위반 외에 다른 법 위반으로 인해 법정에서 정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받았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거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정부로부터 거부당했거나 유예 또는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부문 계약자 하도급 입찰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또는 시공에 있어서 등급 평가 또는 사전심사를 유예, 금지, 자격박탈당했거나 책임성이 없다고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부 기관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이나 거래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 기관에서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판결이나 유치권을 포함하여 정부 기관에게 유리한 경고, 명령 또는 유치권에 반대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인이 현재 법 위반으로 정부 기업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으로 기소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진술 공개 고지

이 진술은 기관이 비공개 정보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1974년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5 U.S.C. § 552a, 주) (93 P.L.579(1976)) 조항에 따라 제공되었습니다. N.J.S.A. 34:1B-5(jj)에 의해 시행되는 원조 지원금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뉴저지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CARES Act"), P.L. 116-136 (2020)에 따라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EDA")는 EDA가 지원금 수령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EDA가 획득하기 위해 귀하의 뉴저지주 총소득, 법인세, 판매세, 사용세 신고서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에게 허가를 요청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즉, TIN 및/또는 SSN)를 포함하여 비공개 총소득, 법인 사업세 또는 판매 및 사용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보조금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의적 의사에 따릅니다.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청 심사가 지연되고 귀하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고지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위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공개 및 사용에 동의하고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관의 대리인인 본인은 N.J.S.A. 54:50-9(a)에 따라 뉴저지주 납세과(New Jersey Division of Taxation) 공개 담당자(Disclosure Officer)가 2018년, 2019년, 2020년의 총소득, 법인 사업세 또는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정보를 N.J.S.A. 34:1B-5(jj)에 따라 EDA가 시행하는 CARES Act 보조금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EDA")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해당 부서가 이 허가 문서의 복사본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허가 문서는 서명 날짜로부터 90일간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아닌 한, 요청된 신고서를 뉴저지주 납세과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담당자의 기록에서 발견한 정보를 누설, 공개 또는 악용함으로써 N.J.S.A. 54:50-8을 위반하는 사람은 4급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에서 본인이 진술한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진술 중 어느 부분이라도 악의적인 허위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 확인서

당국은 제출된 답변과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에게 추가적인 해명 또는 설명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대한 심사 또는 승인 전에, 또는 심사 날짜와 당국의 지원금 집행 사이에 언제라도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답변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불완전한 답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인은 즉시 그 사실을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NJEDA)에서 재정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사실로부터 제안된 프로젝트의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이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특정 프로그램의 관리 위원회 위원만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판단과 지원금 지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서명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1. 본인은 상기의 정보가 고의에 의한 허위인 경우, N.J.S.A. 2C:28-2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EDA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 본인은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가 열람 권한이 있는 기록 검색을 통해 이 문서에 포함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EDA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본인은 신청 시점부터 긴급 사태 종료가 선언되고 6개월 후까지 종업원을 일시 해고 또는 휴직시키지 않기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증명합니다. 이미 일시 해고하거나 휴직시킨 종업원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종업원을 재고용하기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 이 약속을 중대하게 어길 경우에는 NJEDA에서 지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본인은 COVID-19 긴급 사태 선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합니다(가령, 일시적 영업 정지, 근로 시간 단축, 최소 20%의 매출 감소,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종업원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공급망의 중대한 중단과 그로 인한 회사 차원의 생산 차질)
5. 본인은 회사가 현 시점에 긴급 구호 기금의 지원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합니다(가령, 이번 경제적 혼란 시기에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현금 보유분이 없습니다).
6. 본인은 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COVID-19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7. 본인은 회사가 뉴저지주 Department of Treasury, 납세과(Division of Taxation) 기록으로 양호한 업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회사가 모든 필수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회사에게 신고 의무 불이행이나 납세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NJEDA 또는 납세과는 보조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회사가 뉴저지주에 완전하고 올바르게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가 NJEDA 또는 납세과에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았다면 보조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신청인 본인이나 대신하여 EDA에 제출한 정보를 EDA가 요청된 보조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주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0. 본인은 타이틀 18 미합중국 법률 섹션 1001에 의거하여: (1) 미국 정부기관에게 고의적으로 (a) 중요한 사실을 위증하거나,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b) 실질적으로 위증하거나, 기만적 진술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c) 현저히 허위, 허구, 사기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연방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2)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아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11. 본인은 이 신청서, 승인서 또는 지원 계약서의 전자 서명이 양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허락합니다.

전자 서명

문서화된 정책에 따라,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는 문서에 전자 서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그러한 전자 서명이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서명인으로서, 귀하도 전자 서명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자 서명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조직을 대신하여 권한을 가진 서명자이며, 상기 약관을 수락합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